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허보세구역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세공장의 작업허가 신청부터 후속절차까지 규정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로 변경하고,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안 제7조, 제124조의2)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급을 증명하는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 증명자료를 규정하는 등 환급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
- 나.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안 제20조)
운임 등에 대해서는 그 부담주체에 상관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을 삭제함.

다. 일할분(日割分) 납부지연가산세율 조정(안 제39조)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 구체화(안 제70조 및 제84조)

「관세법」 제56조 및 제62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사사항을 덤핑방지 조치·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으로 정함.

마.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97조)

납세자 편의 및 유사제도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함.

바.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대상 법령화(안 제189조)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명확화하고 보세화물 보관·판매 및 관리를 위해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함.

사.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안 제192의7조)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로 변경함.

아. 보세공장의 작업 허가 관련 절차 명확화(안 제203조)

보세공장의 작업허가 신청 외 그 신청에 따른 후속절차(허가기간 연장 및 작업장소 변경, 작업완료 보고)까지 법령에 규정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함.

자.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신청 대상 법령화(안 제205조)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규정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변경함.

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59조의5 신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갱신·취소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함.

카.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안 제259조의6 신설)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를 사전통관정보와 사전발송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규정함.

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조정(안 제277조)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함.

파.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안 제288조)

「관세법」 제32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7. ~ 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의4를 제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 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환불된 날 제20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을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25”를 “22”로 한다.

제70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8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9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1항”을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2제1항”을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을 “물품이 전부 수출 또는 환불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부를 수출하는”을 “일부가 수출 또는 환불된”으로 한다.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영수자료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제1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을 “용도세율이 적용된”으로 한다.

제189조제3호 중 “위험물품을”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로, “위험물품의”를 “해당물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을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로 한다.

제192조의7 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203조제1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 작업에 투입할 원재료 및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의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의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및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
2. 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년

③운영인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작업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작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의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의 작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의 작업을 할 장소를 미리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란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업체가 신청한 보세공장을 말한다.

제236조의4를 삭제한다.

제248조의2제2항 중 “우수 공인업체”를 “우수업체”로 한다.

제258조의5제3호 중 “법 제255조의2제7항”을 “법 제255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수출입 신고·납부 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을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⑥ 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9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통지받은 이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59조의3제2항 중 “법 제255조의2제8항”을 “법 제255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인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분에 해당하는 자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제1항에 따라 공인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5조의4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이 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2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5조의2제7항”을 “법 제255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5조의2제7항”을 “제25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9장제2절에 제25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5(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9장제3절에 제25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6(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전통관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서의 전자적 정보
가.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포장수량 및 총중량
나. 개별물품의 품명·수량·중량 및 가격
다.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사전발송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는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의 전자적 발송정보
가. 우편물 자루번호 및 우편물번호
나. 발송·도착 예정일시, 발송·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 및 운송수단
다.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거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235조 및 법 제237조에 따라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4.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5.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하고자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중 “통관우체국장”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관우체국”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한다.

제265조의2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277조제4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제2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329조제1항”을 각각 “법 제329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255조의2제2항”을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우수 공인업체 심사”를 “우수업체 심사 및 예비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법 제329조제3항”을 각각 “법 제3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제70조제11항 각 호 또는 제84조제11항 각 호 사항의 조사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8조제9항(중전의 제8항) 중 “법 제329조제4항 전단”을 “법 제329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법 제329조제5항”을 “법 제329조제5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10항) 중 “법 제329조제6항”을 “법 제329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번호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포플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플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	--	---	-----	--------------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9조의6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보세관매장별 매출액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7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2021회계연도의 보세관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3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생략)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 3의3. (생략) <신설> 3의4. (생략) 4. 5. (생략)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환불된 날 3의5. (현행 제3호의4와 같음) 4. 5.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 (생략)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 ----- 발 생하는 -----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	제39조(가산세) ①----- -----

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 ----- ----- 22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생략) ⑪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⑬ (생략)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⑫·⑬ (현행과 같음)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생략)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 ~ ④ (생략)

⑤법 제83조·법 제89조제1항제2호·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3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2. ---- 일부가 수출 또는 환불된 -----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용도세율이 적용된 -----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 것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

1. ~ 5. (현행과 같음)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

1.·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 해당 물품 -----

4. -----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 -----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 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3조(보세공장의 작업허가신청) 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 제
 2. 3. (생 략)
 4.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

----- 3월 -----

-----.

제203조(보세공장의 작업허가신청) ①-----

-----.

2.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작업에 투입할 원재료 및 그 -----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의 작업을 허

<신 설>

<신 설>

<신 설>

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및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
2. 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년

③운영인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기간의 연장 또는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작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의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의 작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외작업을 할 장소를 미리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삭제

②법 제232조의3에 따른 원산지 확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란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업체가 신청한 보세공장을 말한다.

<삭제>

원

2.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

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⑫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 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수업체-----

③ (현행과 같음)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

1. 2. (현행과 같음)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4. (생략)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를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3. -----
-- 법 제255조의7제1항-----

4. (현행과 같음)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항”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수출입 신고·납부 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을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⑥ 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9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통지받은 이후에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생
략)
② 법 제255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 제255조의2제5항-----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
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안
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율
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달 15일
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
우에는 공인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분에 해당하는 자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1항에 따라 공인받으려는 자
를 포함한다)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

<신설>

정해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
을 받아야 한다.

⑦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
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
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 규정
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
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
275조의3 및 제275조의4에 따
라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
우
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
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 「대외무역법」, 「외국
환거래법」 및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⑤ (생략)
 제259조의4(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이하 “준수도 측정·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신설>

한 특례법」등 이 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59조의4(준수도 측정·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
 -- 법 제255조의7제1항-----

 -----.

1. ~ 8. (현행과 같음)

② ----- 제255조의7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9조의5(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전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전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전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

<신 설>

로 직접 해당 안전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59조의6(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전통관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서의 전자적 정보가.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포장수량 및 총중량
- 나. 개별물품의 품명·수량·

중량 및 가격

다.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사전발송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는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의 전자적 발송정보

가. 우편물 자루번호 및 우편물번호

나. 발송·도착 예정일시, 발송·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 및 운송수단

다.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235조 및 법 제237조에 따라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4.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5.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①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의 규정에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①통관우체국의 장

의한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통관우체국은 제1항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생략)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통관우체국의 장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
----- 제6항까지

-----.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⑤ ~ ⑦ (생략)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신설>

① (생략)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③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제70조제11항 각 호 또는 제84조제11항 각 호 사항의 조사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법 제329조제2항 -----

1. ~ 6.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329조제2항 -----
 -----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 ----- 우수업체 심사 및 예비심사 -----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⑦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

⑤----- 법 제329조제4항-----

⑥----- 법 제329조제4항-----

⑦----- 법 제329조제4항-----

⑨ ----- 법 제329조제5항 제2호 -----

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 설>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 제3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⑪ ----- 법 제329조제5항제4호-----

⑧ ----- 법

제3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 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 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⑪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29조제5항제1호-----

⑫ ----- 제11항-----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법 제270조제2항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경우	법 제270조제3항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법 제275조의2제1항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	법 제275조의2제2항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경우	법 제275조의2제3항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경우	법 제275조의3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6조제2항제3호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6조제2항제4호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경우	법 제276조제2항제5호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276조제3항제2호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6조제3항제2호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276조제3항제3호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법 제276조제3항제3호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 제276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6조제3항제3호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6조제3항제4호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법 제276조제4항제3호
18.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한 경우.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276조제4항제3호
19. 법 제140조제6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제한 경우	법 제276조제4항제3호
20.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법 제276조제4항제3호

21.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영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법 제276조제4항제3호
22.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	법 제276조제4항제4호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호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호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호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호
2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호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호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호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 운송을 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4호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5호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호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7호
3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2호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5호
38.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6호
41.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 가)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

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자. 법 제13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차. 법 제13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카.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타.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파.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하.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4)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거. 법 제141조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너.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 법 제141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러.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머.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며.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서.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어.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저.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쳐.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커.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법 제277조 제5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경우					
터.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피.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허.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고.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노.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도.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로.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모.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보.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소.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오.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조.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초.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코.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토.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포.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호.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구.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누.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두.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루.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무.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부.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항제5호				
수.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우.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주.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25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추.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쿠.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투.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푸.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후.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그.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느.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드.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르.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4	법 제277조				

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제5항제2호				
가.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브.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브.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스. 법 제221조제2항에서 법 제215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우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으.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즈.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츠.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크.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경우					
트.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프.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호.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기.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니.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디.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리.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미.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6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7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구간별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가. 법 제13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않은 경우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0만원	25만원	50만원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2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항제5호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2)·3)에서 같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5만원	10만원	20만원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5만원	10만원	20만원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277조 제6항제1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기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제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				

류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 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 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 정하는 오류				
--	--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2배
-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	법 제277조 제1항	4천만원
가.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		5천만원
나.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		3천만원
다. 제31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		

비고

-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1억원의 한도에서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left(1 + \frac{\text{지연기간}}{30} \right) \times \text{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금액}$$

※ 지연기간(세관장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제265조의2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세관장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277조의2 제5항 본문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 상당액의 2 배
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금품 상당액의 3 배
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 상당액의 2 배
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금품 상당액의 3 배
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금품 상당액의 4 배
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금품 상당액의 5 배
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